

자체종합감사 결과 및 조치계획

2021년도 자체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한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관리소(세종·동부·중부·서부)에 대한 감사 결과 및 조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.

I. 감사 개요

- 수감기관: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관리소(세종·동부·중부·서부)
- 감사기간: 2021. 5. 12. ~ 6. 11. / 20일간
 - 사전조사: 2021. 5. 12.(수) ~ 5. 18.(화) / 5일간
 - 본 감사: 2021. 5. 24.(월) ~ 6. 11.(금) / 15일간
- 감사인원: 법무감사담당관실 김철용, 황기영, 장기순 / 3명
- 감사범위: 관리소별 이전 자체종합감사 이후 처리한 업무 전반

II. 감사 결과

- 처분 요구 건수: 33건
 - 시정 8건, 기관경고 1건, 주의 13건(기관주의 10건 포함), 통보 9건, 모범사례 2건

III. 처분 요구 내역

(단위: 건, 명, 천 원)

구분	합계			징계 (인원)	시정 (금액)	경고 (인원)	주의 (인원)	개선	권고	통보			고발 (인원)	현지 조치
	건수	금액	인원							일반	시정 완료 (금액)	모범 사례 (인원)		
총괄	33	9,523	3	-	8 (9,523)	1 (0)	13 (3)	-	-	9	-	2 (0)	-	-
세종	10	3,273	1	-	2 (3,273)	-	3 (1)	-	-	4	-	1 (0)	-	-
동부	8	1,824	1	-	3 (1,824)	-	3 (1)	-	-	1	-	1 (0)	-	-
중부	6	3,391	0	-	1 (3,391)	-	3 (0)	-	-	2	-	-	-	-
서부	9	1,035	1	-	2 (1,035)	1 (0)	4 (1)	-	-	2	-	-	-	-

IV. 지적 및 처분 조치 내용(요약)

연번	처분종류	지적 및 처분내용	비고
1	통보	<p><지적내용>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경관수목대장 작성 필요</p> <p>○ 문화재 경관에 직접 연관이 되는 수목과 관람지역 내 수목 등은 경관수목대장과 도면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하나,</p> <p>- 세종대왕유적관리소는 “영·영릉 유적 종합 정비사업”의 경관수 등 조경수목 조성 이후 경관수목대장 및 도면 미작성</p> <p><처분내용></p> <p>○ 관련 규정에 따라 경관수목대장과 도면 작성·비치</p>	세종
2	시정	<p><지적내용>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세종대왕릉 재실 복원공사 재시공 필요</p> <p>○ “영·영릉 유적 종합 정비사업” 중 복원된 재실의 향대청, 전사청, 재실, 부속채의 외편 골뚝 8개소 2,460,000원이 외편 사이 줄눈(생석회 마감) 폭 등 준공 설계도서와 다르게 복원됨</p> <p><처분내용></p> <p>○ 英陵 재실의 외편골뚝 8개소(2,460,000원)를 설계도서대로 재시공</p>	세종
3	통보	<p><지적내용>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국유재산 관리 부적정</p> <p>○ 국유재산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불법으로 무단점유 사용하는 국유재산은 변상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,</p> <p>- 국유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*하여 경작을 하는 등 무단점유(약 1,500㎡) 사실을 인지하지 못함</p> <p>* 무단점유자는 본인의 토지로 판단하여 1992년부터 사용</p> <p><처분내용></p> <p>○ 관련 법규에 따라 변상금 부과·징수</p>	세종

연 번	처분 종류	지적 및 처분내용	비 고
4 · 5	통보 · 주의	<p><지적내용>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유물 관리 부적정</p> <p>○복제·복원품은 유물에 해당하지 않으며, 소장유물은 수시로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나,</p> <p>- 유물과 복제·복원품이 구분 없이 유물대장에 함께 관리</p> <p>- 유물대장의 유물번호와 수장고 유물번호표가 다르게 유물 관리 (3건), 유물번호 중복 등록(1건) 등 유물관리 미흡</p> <p>- 유물을 수장고에서 문서고, 목재창고로 임의 변경 보관(2건)</p> <p><처분내용></p> <p>○보유하고 있는 유물을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보존·관리(통보)</p> <p>○유물 관리 등의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주의(주의)</p>	세종
6	시정 (환수)	<p><지적내용>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공사 완료 시 보험료 정산 미실시</p> <p>○공사 완료 시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보험료를 집행하지 않거나 산출 내역보다 적게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하여야 하나,</p> <p>- “2018년 방화선 설치 및 임내정리 사업”은 국민연금보험료, 건강 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정산 없이 준공</p> <p><처분내용></p> <p>○정산하지 않은 보험료 1,092,840원 환수</p>	동부
7 · 8 · 9 · 10	시정 (환수)	<p><지적내용>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대체휴무 부여와 초과근무수당 지급 중복 부적정</p> <p>○휴일에 8시간(식사시간 제외) 이상 근무한 경우, 대체휴무와 초과 근무수당 둘 중 하나만 부여하여야 하나,</p> <p>- 대체휴무를 하였는데도 초과근무수당 지급(최근 5년간 세종 13건, 동부 12건, 중부 38건, 서부 16건)</p> <p><처분내용></p> <p>○(세종) 중복 지급한 초과(휴일)근무수당 812,960원 환수</p> <p>○(동부) 중복 지급한 초과(휴일)근무수당 730,690원 환수</p> <p>○(중부) 중복 지급한 초과(휴일)근무수당 3,391,410원 환수</p> <p>○(서부) 중복 지급한 초과(휴일)근무수당 1,035,410원 환수</p>	세종 · 동부 · 중부 · 서부

연 번	처분 종류	지적 및 처분내용	비 고
11 · 12 · 13 · 14 · 15	기관 주의 · 주의	<p><지적내용>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문화재수리 보고서 제출 미흡</p> <p>○문화재수리업자와 문화재수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문화재 수리를 한 경우에는 수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,</p> <p>- 각 조선왕릉관리소는 경상적인 문화재 수리는 수리보고서를 제출 받지 않아도 된다고 임의 판단하여 제출 받지 않음</p> <p>- 동부, 서부지구관리소는 보수·정비 이력 전자행정 시스템에 미입력</p> <p>○“과주 삼릉 관리동 건립공사”의 수리보고서 제작비용이 2,081,226원 책정되어 있으나,</p> <p>- 프린터물 형태의 보고서 5부(추정가격 40,000원)만 납품 받음</p> <p><처분내용></p> <p>○(세종, 중부) 관련 법령에 따라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제출받아 관리(기관주의)</p> <p>○(동부, 서부) 관련 법령에 따라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제출받아 관리, 문화재 전자행정 시스템에 보수·정비 이력 입력(기관주의)</p> <p>○문화재수리 보고서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주의(주의)</p>	세종 · 동부 · 중부 · 서부
16 · 17 · 18 · 19	통보	<p><지적내용>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역사문화관 실내 공기질 관리 필요</p> <p>○역사문화관 등은 실내 공기가 「다중 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」 기준에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나,</p> <p>- 각 조선왕릉관리소는 역사문화관 건립 이후 공기질 측정 없이 운영하여 적정 공기질 유지 여부 확인 곤란</p> <p><처분내용></p> <p>○역사문화관의 실내 공기질 측정 등 관리</p>	세종 · 동부 · 중부 · 서부
20 · 21 · 22	기관 주의 · 주의	<p><지적내용>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공무원 등 근로자 채용 공고 부적정</p> <p>○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보훈가점을 부여한다고 공고 하거나 적용하여서 안 되나,</p> <p>- 보훈가점을 공고문에 명시하여 공고하거나 적용(세종 3회, 동부 8회, 서부 2회)</p> <p>○근무경력자가 채용시험에 응시하였으면 내부 직원을 서류전형 위원으로 위촉하지 않아야 하나,</p> <p>- 서류전형위원으로 위촉, 제척·회피 미신청(서부)</p>	세종 · 동부 · 서부

연 번	처분 종류	지적 및 처분내용	비 고
		<p><처분내용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(세종) 채용 시 관련 법령에 적합하도록 보훈가점 부여(기관주의) ○(동부) 채용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주의(주의) ○(서부) 채용 시 관련 법령에 적합하도록 보훈가점 부여, 응시자와 이해관계 등이 있는 경우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조치(기관주의) 	
23 · 24 · 25	기관 주의	<p><지적내용></p> <p>□ 시설부대비 집행 부적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설부대비의 피복비 집행은 공사감독 공무원 등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의 감독 업무를 하는 직원에게만 지급하여야 하나,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피복구입 시점에 감독공무원 등이 아닌 자에게도 피복 지급 (동부 19명, 중부 14명, 서부 17명) <p><처분내용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설부대비의 피복비 집행은 구입시점의 공사감독 공무원 등 감독 업무를 하는 직원에게만 구입·지급 	동부 · 중부 · 서부
26 · 27	시정	<p><지적내용></p> <p>□ 설계변경 시 설계도면 미변경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설계변경 시에는 변경 설계도서를 적합하게 작성·첨부하여야 하고, 준공 시에도 준공도면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,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“동구릉 화장실 외벽 정비공사”는 외벽 마감재 크기 및 형태가 다름에도 설계도면 미변경 - “파주 삼릉 및 양주 온릉 경계울타리 정비사업”은 배치도 등 설계도면 미비 <p><처분내용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계변경 시 설계도서 첨부, 준공 설계도서를 현황에 맞도록 보완 	동부 · 서부
28 · 29	통보	<p><지적내용></p> <p>□ 종합경비시스템 관리·운영 미흡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각 기관은 종합경비시스템에 대해 영상 정보 처리 기기 설치·운영 규정을 자체적으로 작성·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하나,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부는 2013년 이후, 서부는 2016년 이후 규정 현행화 미흡 ○ 용역업체에서 자재비 청구 시 영수증 등 확인 절차 없이 용역업체의 견적서만으로 자재비 지급 ○ 자산 성격의 장비 물품을 구입하였으면 물품으로 등재하여야 하나 미등재(중부 46건 31백만원, 서부 28건 24백만원) 	중부 · 서부

연 번	처분 종류	지적 및 처분내용	비 고
		<p><처분내용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체 종합경비시스템 설치 운영 규정 현행화, 장비이력카드 작성·비치, 용역업체에서 장비 수리에 소요된 부품은 확인 후 정산 지급, 자산 성격의 내구성 물품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물품으로 등재하여 관리 	
30 · 31	기관 주의 · 기관 경고	<p><지적내용></p> <p>□ 일반수용비 목적 외 사용 부적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관서업무추진비, 기타운영비 성격의 경비를 일반수용비로 집행해서는 안 되나,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환경정화 활동(중부), 직장교육(서부)을 실시하고 일반수용비로 직원 간식을 구입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(중부 42건 5,688,020원, 서부 125건 14,761,020원) <p><처분내용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중부) 간식비 성격의 물품을 일반수용비에서 구입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등 실시,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예산 집행(기관주의) ○ (서부) 간식비 성격의 물품을 일반수용비에서 구입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등 실시,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예산 집행(기관경고) 	중부 · 서부
32 · 33	모범 사례	<p><사업내용></p> <p>□ 문화재구역 토지 지목 변경을 통한 국유재산 관리 개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조선왕릉관리소의 문화재구역 필지가 전, 답, 임야 등의 지목으로 관리되어, 각종 시설공사 등의 사업 추진 시 농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야 하고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는 등의 행정력과 예산이 소요되어 왔으나,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관할 지자체에 토지이동(지목변경 등) 신청하여 지목을 사적지로 지적 정리(세종: 52필지 2,122,250.7㎡, 동부: 89필지 2,494,593㎡) <p><평가내용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토지이용에 대한 행정절차 간소화, 농지전용부담금 납부 제외에 따른 예산 절감 등 국유재산 관리 개선에 기여하여 모범이 됨 	세종 · 동부 *연말 자체 종합감사 우수사례 표창 후보에 포함